

의안번호	2217558
의 퇴 인	이성윤의원
회 답 일	2026.9.15.
추계번호	26D1527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정책의 연구·추진 등)	법무부장관의 업무 범위에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·취업·창업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연구와 추진을 포함	의무규정
2	안 제16조의2(우수 해외인재 육성·정주여건 지원)	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–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·취업·창업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 – 우수 해외인재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– 우수 해외인재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취업정보, 자녀 보육·교육 등 지원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(정책의 연구·추진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6조의2(우수 해외인재 육성·정주여건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우수 해외인재 정책의 연구·추진 (안 제9조제1항제6호), 우수 해외인재 육성·정주여건 개선(안 제16조의2 신설)
 - 법무부장관이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·취업·창업 및 정착 지원 등에 관

한 정책을 연구·추진하도록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학업·취업·창업 등 지원, 한국 문화 교육, 취업정보 제공, 자녀 보육·교육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추가 재정소요 발생

- 다만, 우수 해외인재 정착을 위한 연구의 수행 범위 및 소요 비용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, 지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해외인재의 범위 및 규모,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 법무부는 2026년 기준 「외국인사회통합지원」 사업에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함

[표 1] 법무부 「외국인사회통합지원」 사업 예산 내역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내내역사업	예산
외국인사회통합지원	공무직 근로자 운영		1,629
	외국인 사회통합업무 지원	난민업무 지원	3,781
		국적, 기타 사회통합업무 지원	7,780
		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	2,020
	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		3,561
	합계		18,771

자료: 법무부 2026년 사업설명자료 II-1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